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474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5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뱅크샐러드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1.11.24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 인증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